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1. 11. 1.(월) / 총 5매(본문3, 참고2)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유진, 서기관 오한영, 주무관 허성현 • ☎ (044) 201-4094, 3771
	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호성, 사무관 황채은 • ☎ (044) 203-5140, 5149
보 도 일 시		2021년 11월 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에너지 줄이고 만들어 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, 빠르고 편리해진다

- 기존 1개 기관 → 8개 기관 신규 지정… 인증처리기간 단축 기대 -

□ 앞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,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**제로에너지건축물**(Zero Energy Building, 이하 'ZEB')**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증**받을 수 있게 된다.

○ **국토교통부**(장관 노형욱)와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ZEB를 확산하고,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**ZEB 인증기관 8개*를 신규 지정**한다고 밝혔다.

*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, 한국부동산원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환경건축연구원

□ ZEB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·효율화 되도록 하고,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로 **에너지자립률*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**까지 구분된다. ZEB 인증을 취득하면 **에너지 비용이 절약**될 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 **취득세 감면, 용적률 완화**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.

*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

ZEB등급	에너지자립률*	전제 조건
1등급	100% 이상	① 에너지효율등급 1++등급 이상 ②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 또는 원격전자식검침기 설치
2등급	80 이상 ~ 100% 미만	
3등급	60 이상 ~ 80% 미만	
4등급	40 이상 ~ 60% 미만	
5등급	20 이상 ~ 40% 미만	

○ '17년 ZEB 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건수는 **매년 지속적으로 증가**하였으며, '20년부터 공공부문 의무화 시작(1,000m^2 이상)으로 급증하고 있다.

○ 향후에는 **'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**(500m^2 이상), **'25년 민간 의무화 도입**(1,000m^2 이상)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예정*이다.

* '17년 10건 → '18년 30건 → '19년 41건 → '20년 507건 → '21년 1천여건 예상

<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요 우수사례(1등급)>

화성시 동탄7동도서관(왕배푸른숲도서관)	성남시 LG ThinQ Home

□ 그럼에도 **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**에 불과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, 인증 처리 시간도 **오래 걸리는 문제**가 있었다.

○ 또한, 건축주 입장에서는 ZEB 인증을 받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*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**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**이 있었다.

* ZEB 인증요건으로 에너지효율등급 1++ 이상 인증 취득 필요

□ 이에, 지난 8월 23일 개정된 「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*」에 따라 **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**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**신청을 받았으며,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** 전문 인력 및 조직,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하여 **최종 확정**되었다.

* ZEB 인증기관을 상호 연관성이 높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 지정토록 개정

○ 신규 지정된 **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**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**'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**된다.

□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**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**될 것으로 전망되며, 인증기관 한 곳에서 **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**할 수 있게 되어 **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**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**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**은 "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**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**되길 기대한다" 면서

○ "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**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**하겠다"고 밝혔다.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**은 "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%로, **탄소중립 달성**을 위해서는 **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**하다"고 밝혔다.

【참 고】 1. 제로에너지건축물 신규 지정 인증기관
2. 제로에너지건축물(ZEB) 개요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오한영 사무관(☎ 044-201-4094), 산업통상자원부 황채은 사무관(☎ 044-203-514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제로에너지건축물 신규 지정 인증 기관

번호	기관명	대표자	소재지
1	국토안전관리원	박영수	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
2	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 기술원	조정훈	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7층, 8층
3	한국건설기술 연구원	김병석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
4	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 환경연구원	맹준호	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6길 5, 7층
5	한국부동산원	손태락	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
6	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주식회사	정의식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, 서울상공회의소회관 12층
7	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	김종남	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
8	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 연구원	이경희	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, 에이치비지니스파크 D동 907호

참고2 제로에너지건축물(ZEB) 개요

□ (정의) 건축물에 필요한 **에너지부하**를 **최소화**(패시브)하고 **신·재생에너지**를 **활용**(액티브)하여 **에너지 소요량**을 **최소화**하는 녹색건축물

< 제로에너지건축(ZEB) 개념도 >

패시브(Passive)	+	액티브(Active)	⇨	제로에너지건축 (Zero Energy Building)
냉·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(단열성능 강화 등)		신재생에너지 생산 (태양광, 지열 등)		

□ (인센티브) **다양한 지원정책**을 마련하여 **건축주 부담 완화 추진**

- 건축기준 완화 :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급별 기준완화(15%~11%)
- 세제혜택 : 취득세 감면(1~3등급 20%, 4등급 18%, 5등급 15%)
- 자금 및 금융지원 :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% 상향,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최대 15% 경감률 적용, BEMS 보조금 지원 등
- 기타(산업부) :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, 설비 투자비 저리 지원 등

□ (인증건수) '21.9월까지 **1,380건 인증완료**(운영 및 인증기관 : 한국에너지공단)

구 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.9월	계
예비인증	10	26	35	493	750	1,291
본인증	-	4	6	14	42	63
합 계	**10**	**30**	**41**	**507**	**792**	**1,380**

□ (인증등급) **에너지자립률***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

*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

ZEB등급	에너지자립률	전제 조건
1등급	100% 이상	① 에너지효율등급 1^{++}등급 이상 (최고1^{+++}~ 최저7등급) ②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 또는 원격전자식검침기 설치
2등급	80 이상 ~ 100% 미만	
3등급	60 이상 ~ 80% 미만	
4등급	40 이상 ~ 60% 미만	
5등급	20 이상 ~ 40% 미만	

※ ZEB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**제로에너지건축물** 누리집(www.zeb.energy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